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11. 2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0년 11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10년 11월 26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이 재 덕

가. 개정이유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 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22378호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구 해당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개정 내용

- (1) 안 제3조 관련 별표 중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42종을 36종으로 감축하였고 그 사유는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1)세목별 납세증명과 (2)세목별 과세증명”을 “(1)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으로 단일화하고 현행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실제로 무료로 발급되고 있거나 징수가 불가능한 아. 회계관계 증명에서 (1)물품 납품실적증명, (2)공사 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증, (3)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증명, (4)물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 (5)보상금 지불 증명 등 총 7종이 폐지
- (2) 안 같은 조 별표 중 2. 각종 인. 허가 및 신고사항(66종)의 가목(29)“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로, 나목(12) “공유재산 대부(연장) 신청”을 “공유재산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으로, 같은 목(1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로, 수수료액 “3,00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가목(28)과 나목(17)(18)(22)(23)(34)(35)의 종목명칭에 “의”를 삽입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생안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구민중심의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확대 강화하여 더불어 잘 사는 복지마포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안전도시 구축, 질 높은 보건행정 서비스와 의료안심 정책 추진을 위한 보건소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

표로 재편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업무량, 업무의 연관성 부서의 업무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재설계되었고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개정되었고 입법예고 등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